

[논 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

박호현* · 김종호**

《차 례》

- | | |
|----------------------|--------------|
| I. 서론 | IV. 법률개정의 방향 |
| II. 소년사법의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 |

I. 서론

소년법은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1958년 제정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07년 소년법이 다시 개정되었지만 소년법이 담고 있는 소년 보호주의에 의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지는 못하였다. 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국친사상을 통한 소년들의 보호 및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소년법은 대상 소년들의 연령을 낮춤으로써 보호처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확대는 소년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증대

* 주저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찰학박사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찰학박사수료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년범죄들은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게 잔인함과 흉악함을 내포함으로써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엄벌화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소년범죄의 발생으로 엄벌화의 여론형성은 형사제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엄벌주의를 통해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2017년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소년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소년보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안으로서 소년에 대한 엄벌화가 아닌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II. 소년사법의 이론적 배경

1. 소년보호주의의 이념

소년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시기이기 때문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도 높지만 철저한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반성과 개선의 정도도 성인들과는 달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는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소년보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보호란 비행소년들에 대해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소년 각자의 특성을 관찰해 보호를 요구하고,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정하여 범죄로부터 소년을 보호하며, 중국에는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엄벌화가 아닌

발생범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범죄에 알맞은 처분을 바탕으로 소년들을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¹⁾

소년보호이념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관점에서 구분되고 있다. 영미법은 소년보호를 국친사상을 바탕으로 복지적 내지 후견적 인식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륙법은 법실증주의를 통해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소년 각자의 개별적 처우를 근간으로 소년의 교화 및 개선을 중요시 한다.²⁾

우리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화와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재사회화로 인한 사회복귀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특히, 소년보호이념은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년보호주의는 개별주의, 교육주의, 과학주의, 예방주의, 인격주의, 협력주의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³⁾

2. 소년사범의 종류

영미법과 대륙법은 소년사범에 대한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 영미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중요한 이념적 요소로 인식하고, 대륙법은 보호주의를 중요한 이념적 요소로 인식 하면서도 사법적 기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영미법과의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결국,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년에 대한 교육 및 보호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⁴⁾

1) 이은영(a), “소년사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7-18면.

2) 박호현(a), “소년사범의 실천방안-8호처분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160-161면; 국친사상은 12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환경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며, 교육에 의한 교화와 개선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이 성인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결국, 국친사상은 성인범죄와는 다른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Dean J. Champ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Delinquency, Processing and the Law*, 3rd edition, Thomson, 2006, p. 25).

3) 김혁(a),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2-19면.

4) 김혁(b),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40-45면.

그러므로 범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개선 및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며,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보다는 소년들의 개별적 처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년보호주의의 강화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실제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소년에 대한 온정과 관대한 처벌은 사회 보호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를 범한 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성인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자체의 존재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성장해가는 시기에 있는 소년들에게 낙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어 소년사범이 내포하고 있는 보호주의 이념이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⁵⁾

그러므로 소년사범은 소년법의 궁극적 목적과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소년보호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소년법 제1조는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반성과 교화 내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아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 및 그 정도가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약하거나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 폭행사건들이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뱃불로 지지거나 성매매 강요까지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잔인하고 흉포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발생의 경향은 국민들에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

5) 박호현(b),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제44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45-148면.

다. 청소년 범죄발생에 대한 엄벌화는 소년법상의 연령의 인하, 전건송치주의의 강화, 12세미만 촉법소년의 소년원 수용 등을 통해 청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⁶⁾

하지만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요구는 소년보호이념 및 소년법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육에 의한 교화와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의한 범죄발생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년에 대한 처벌 내지 엄벌화만이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⁷⁾

소년사법은 어른들의 편익에 의해, 언론의 편향된 보도 및 여론형성에 의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년에 의한 범죄발생을 단지 강화된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소년에 대한 처벌은 성인범죄자들에 비해 완화된 처벌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형법이 범죄성립요건으로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제재에 있어서도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형사제재를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강화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엄벌화가 단기적 범죄감소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엄벌화를 통해 소년들을 오랜 기간 교정기관에 머무르게 한다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연령의 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분리하여 소년원 등의 시설에서 처우하는 것이 과연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방안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⁸⁾

6) 이은영(b),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42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26-33면.

7) 자세한 내용은 국민일보 이슈논쟁, 소년법 개정...“잔인함에 용당하게” VS “예방책 강구해야” (www.news.kmib.co.kr 접속일자: 2017년 11월 15일) 참조.

8) 박호현 · 김명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 124-128면; 박호현(a), 앞의 글, 2016, 163-164면.

Ⅲ.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2017년 9월에 발생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지 엄벌화의 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잔인하고 흉포화 된 소년범죄들이 줄을 지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범죄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소년법 개정 법률안 제안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소년법 개정 법률안 분석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엄벌화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년보호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법률안 내용분석

가. '권미혁 대표발의 법안'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범한 범죄소년,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뿐만 아니라, 장래에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 내지는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인 우범소년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범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단순히 우범성만으로 범죄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예비범죄자로 간주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우범소년들을 소년보호사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결국,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범소년 관련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⁹⁾

나. '오신환 대표발의 법안'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사건의 심리 이후에는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게 되면 판사는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게 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관련 근거를 소년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에서 찾고 있지만, 소년법 제9조와 제11조는 범죄소년 및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현행 소년법에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¹⁰⁾

다. '이용주 대표발의 법안'

사회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등의 사회문제로 가정해체의 비율이 증가되면서 '가출패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소년들의 범죄노출은 재범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해체, 학업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들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환경에 내재하는 비행유발 요인들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협력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

9) 이 내용은 2017년 3월 17일 권미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송옥주, 김종민, 어기구, 강훈식, 강병원, 유동수, 전해철, 김병기, 신창현, 박찬대, 김상희, 문미옥, 최운열, 송기현, 서영교, 김영호, 박경미, 이훈, 김정수, 김철민, 안호영, 유은혜, 김병욱, 조승래, 위성곤의원 등 총 26인이 발의한 것이다.

10) 2017년 6월 12일 오신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민봉, 여상규, 강훈식, 김현아, 정우택, 유승민, 유의동, 하태경, 박인숙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한 것이다.

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¹⁾

라. '김진태 대표발의 법안'

소년법은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들이 범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소년범죄 중 재범의 경우가 약 38%(2006년 약 29%), 전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재범에 이른 경우 약 16.5%(2006년 4.4%)에 이르는 등 범죄를 범한 소년들이 소년사법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재범비율 증가 원인은 가정 해체 등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체계를 명문화하고 있는 소년법은 1958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변화를 갖지 못하였으며, 특히 변화된 환경에서 소년사법체계의 재범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소년보호처분은 집행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거나 심판기관인 법원이 집행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통일적, 체계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고 처분을 집행할 대상기관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집행 부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둘러싼 가정, 교우관계 등 환경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 소년별 환경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 즉, 소년보호에 대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현재 전담 집행하는 4·5호(보호관찰) 및 8·9·10호(소년원 송치) 외에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등

11) 2017년 7월 24일 이용주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해영, 송기석, 박주현, 박지원, 주승용, 박준영, 정인화, 김경진, 최도자위원 등 총 10인이 발의한 것이다.

위탁) 등 나머지 소년보호처분도 전담해 집행 또는 집행감독에 대한 전체 보호처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가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및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처분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다. ‘백혜련 대표발의 법안’

소년법은 경찰 등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수사, 재판,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 등이 경찰서장 등에게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처분 내용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소년법 제70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즉, 법률적 용에 대한 자의성이 작용하고 있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장관이나 학교장 등이 학적 조치를 함에 있어 필수적 사항이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소년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에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¹³⁾

12) 2017년 7월25일 김진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갑윤, 이현재, 강효상, 이종명, 김광림, 최교일, 경대수, 광상도, 이채익, 이은재의원 등 총11인이 발의한 것이다.

13) 2017년 8월4일 백혜련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세정, 안규백, 박찬대, 조배숙, 소병훈, 김경진, 오세세, 김정우, 표창원, 심재철의원 등 총11인이 발의한 것이다.

2. 시사점

성인들에 비해 소년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들의 미성숙을 이유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된 처벌로 이루어져 왔다. 즉, 청소년들이 성장해 민주적 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범죄경력 내지 가혹한 처벌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는 양적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인 화, 흉포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처우 및 교육중심의 소년사법절차에서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년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또는 엄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처벌강화는 보호를 요하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강제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범한 청소년의 처벌연령을 낮추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7년 9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러 소년범죄들이 발생하였고, 그 범죄들의 정도는 성인범죄와 비교해도 잔인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들에게 강화된 처벌만이 완전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소년법 재정당시의 보호이념을 인식하고 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엄벌화가 목적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해 소년들의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소년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들이 과연 소년법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소년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보호처분들이 응보적 요소들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보호적 차원의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그 활용에 있어 응보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인식을 통해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순히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과 행위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보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했

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종류에도 그 경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완화적, 예방적으로만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어떻게 낙인효과를 배제하면서 다양한 치우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처분이 형벌에 비해 응보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 교육적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대한 엄벌화는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감은 물론이고, 소년이 범죄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나 완화된 처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보호처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해결하여 소년들에게 적용한다면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보호처분을 마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선량한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에서 제재로, 교육보다는 처벌로, 치료보다는 책임이라는 엄벌화는 소년범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개입형 다이버전과 사회내치우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적 치우와 연계하되, 중한 범죄를 범한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간단계의 치우절차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다양한 치우방식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육적 기능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범위 내에서 담당하기 어렵다면 민간기관과의 상호협력 내지 민간위탁의 방법을 활용해 복지적 측면을 통한 소년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계들이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V. 법률개정의 방향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엄벌화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피로 범벅된 사진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감정은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처벌강화와 엄벌화라는 화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력한 처벌과 엄벌화가 유일한 정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소년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소년보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문제점을 찾아내 소년범죄자들의 교화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여론에 의한 소년 연령 확대 금지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아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다양한 청소년범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들이 과거와는 달리 잔인성과 흉포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청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소년법 개정 법률안 제안으로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그리고 우범소년들에 대한 연령을 낮춤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¹⁴⁾

그리고 특정 소년범죄 발생에 따른 감정적 대응은 소년사법제도가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론에 의한 정책적 변화는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14) 2017년 9월 6일 하태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 법률안(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개정 법률안 발의), 2017년 9월 8일 이석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 법률안(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자는 개정 법률안 발의), 2017년 9월 13일 박덕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 법률안(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개정 법률안 발의) 등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낮추는 많은 입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연령과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하향적 문제해결로 소년범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형성에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은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을 법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만들어버려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렸다.¹⁵⁾

소년범죄 발생에 대한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내지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특정 범죄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노감정의 증폭으로 검증되지 않은 범죄의 다양화, 흉포화, 저연령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결국, 형법과 소년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연령을 몇 살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책임주의원칙과 소년보호주의가 교차하는 부분의 영역이자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사건에 따른 분노의 표출로서 소년범죄의 연령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¹⁶⁾

또한 연령대가 낮은 범죄소년들은 자신이 범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즉,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이후에 반성과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특성은 성인범죄자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형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과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 만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년범죄의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화된 처벌과 엄벌화가 아닌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년보호이념이 소년법 제정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¹⁷⁾

15) 박광현, “소년사범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09-110면; 이은영(a), 앞의 글, 2014, 154-155면.

16) 강지명,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회복적 공동체 사범에 의한 연령별 보호처분 마련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7권(특별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100-102면; 이은영(b), 앞의 글, 2016, 43면.

17) 최병욱, “위기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과 인문치료”, 인문과학연구 제49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512-520면.

2.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 대상 소년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

법무부 통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25,946명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48,007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44,2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2년에는 53,536명을 나타내었다. 이후 2013년 43,035명, 2014년 34,165명, 2015년 34,07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소년보호사건 대상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의 연령조정 및 우범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통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현황을 통해 분석해 보면(2006년-2015년), 상해, 폭행, 절도, 성폭력 등 전체적으로 죄명별 접수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소년보호사건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인해 언론 및 대중매체 그리고 시민 단체는 소년보호사건 대상 소년들을 무법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엄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엄벌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및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또한 가출 이후 성매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방지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²⁰⁾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교육은 비행유형에 따른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주어지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로 통보하여 학생지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재학생은 본

18) 자세한 내용은 2016년 범죄백서 중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601면) 참조.

19) 2016년 범죄백서 중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현황(604면) 참조.

20) 이은영(a), 앞의 글, 2014, 188면.

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교육 과정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사회적응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 후 일정한 지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은 2015년의 경우 대안교육을 받은 총 36,638명 중 일반학생이 26,057명으로 71.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소유예자가 14.0%, 기타 14.3%, 법원 보호처분대상자 0.6%의 순이었다. 이러한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의 실시여부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현실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실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대안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¹⁾

그리고 현재 청소년 심리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행청소년 지도경험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과 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성, 지능, 성격검사 등을 실시하여 소질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을 전공하고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원이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심리 상담을 받는 인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청소년 심리와 함께 보호자 교육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행청소년 지도, 교육과정을 통해 쌓여온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하여 법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자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지원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가정의 기능과 역할 증대,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사춘기 부적응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1박2일 또

21) 최해룡,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175-176면; 2016년 범죄백서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활동(667면) 참조.

는 2박3일 과정의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인 행사로서가 아닌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를 위한 지속적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²⁾

3. 보호관찰 제도를 통한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호관찰제도가 사회내처우로서 소년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제도라는 점과 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개선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주의 이념과 합치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부족, 국민들에 의한 인식의 부족, 정책적인 부분과 실질적 보호관찰에 대한 운영의 불일치, 교화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증가로 소년 대상 보호관찰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소 분리 운영이 요구되며, 소년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시행된다면 보호관찰관이 일정한 중재자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²³⁾

소년법은 보호처분에 대해서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법률에 유보해 두고 있다. 즉,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22) 안윤숙·김명희·이정미, “중간처우 시설의 부모자녀관계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효광원의 허그캠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41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82-93면.

23) 박호현·김명대, 앞의 글, 2017, 142-143면; 정신교, “소년법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151-158면.

에 관련된 내용,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내용 외에는 소년들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년들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있지 못한 소년법이 소년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고 소년보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수처분과 준수사항의 부과가 요구된다.

그러나 부수처분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속적인 이행을 명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중한 단계의 보호처분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한단계의 보호처분을 명한다고 하여 처벌을 강화하거나 엄벌화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준수사항 별로 보호처분을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탁받은 자에게 보고서와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형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 검사에게 주어져 있고, 보호처분도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형벌대체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에 대한 집행과정과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검사가 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⁴⁾

4. 소년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소년법 제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바탕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년범죄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소년사법기관,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소년사법

24) 이은영(a), 앞의 글, 2014, 181-182면.

절차 전(全)과정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별 기능의 중복으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과열된 경쟁방지를 위해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소년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 여러 기관들과의 유기적 상호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²⁵⁾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방정부가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만의 특성에 맞는 소년범죄 예방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소년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기관, 다양한 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들 간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⁶⁾

다양한 기관들의 상호협력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보호의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책임에 있어서도 국가, 개인, 국가와 개인의 혼합적 주체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각 협력기관들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 기관별 소년범죄 발생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이후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기초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⁷⁾

25) 박호현·김중호·백일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83면.

26) 이은영(a), 앞의 글, 2014, 175면.

27) 박호현(a), 앞의 글, 2016, 174-175면.

V. 결론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 소년범죄의 잔인성과 흉악성의 내포는 결과적으로 소년법을 통한 소년보호주의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시설내처우의 강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화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화의 요구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졌고, 특히 법무부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범죄의 발생에 의한 엄벌화의 주장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범의 엄벌화는 소년들의 연령이하로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고, 전건송치주의를 통해 경미한 소년사건까지도 그 대상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소년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소년보호이념을 후퇴시키고, 교육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엄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여론에 의한 소년 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소년범죄 발생을 억제하거나 재범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년들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 대상 소년에 대한 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및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또한 가출 이후 성매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방지고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보호관찰 제도를 통한 사회내처우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소 분리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소년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년범죄는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 : 2017. 12. 13.

심사일 : 2018. 2. 27.

게재확정일 : 2018. 2. 2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지명,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회복적 공동체 사법에 의한 연령별 보호처분 마련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7권(특별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 김혁(a),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혁(b),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박광현,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박호현(a), “소년사법의 실천방안-8호처분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 _____. 김명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
- _____(b),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제44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_____. 김종호 · 백일홍,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개선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7.
- 안윤숙 · 김명희 · 이정미, “중간처우 시설의 부모자녀관계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연구-효광원의 허그캠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41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 이은영(a), “소년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은영(b),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42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정신교, “소년범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최병욱, “위기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과 인문치료”, 인문과학연구 제49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최해룡,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2. 외국문헌

Dean J. Champ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Delinquency, Processing and the Law*, 3rd edition, Thomson, 2006.

3. 기타자료

국민일보 이슈논쟁, 소년법 개정...“잔인함에 응당하게” VS “예방책 강구해야”(www.news.kmib.co.kr 접속일자: 2017년 11월 15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26인, 의안번호: 2006246, 제안일자: 2017년 3월 17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07331, 제안일자: 2017년 6월 12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08171, 제안일자: 2017년 7월 24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008183, 제안일자: 2017년 7월 25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008403, 제안일자: 2017년 8월 4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009133, 제안일자:
2017년 9월 6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27인, 의안번호: 2009212, 제안일자:
2017년 9월 8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09314, 제안일자:
2017년 9월 13일)

<국문초록>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범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

박호현 · 김종호

소년법 제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아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 등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은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은 잔인성과 흉포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소년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주의를 통해 국친사상을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년들을 건전한 시민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벌보다는 교육과 복지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의 연령저하 및 엄벌화의 요구를 부추기는 여론형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년사범제도의 엄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2017년 발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해 살피고,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을 위한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

주제어: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범죄, 성인범죄, 엄벌

<Abstract>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 Focussing on the Reinforcement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

Park, Ho-Hyun · Kim, Jong-Ho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is to work for necessary measures like protective custody in order for behavior correction and environmental adjustment of juvenile who are antisocial and to help them grow soundly by giving special measures as criminal punishment. Indeed, that aims at their comeback to society through education and improvement based on protective ideology. However, various juvenile crimes happened such as assault cases of Cheonan middle school girls, Asan middle school girls, Gangneung high school girls and Busan high school girls in 2017, thus those becomes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some people say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crimes is needed by lowing the age of juvenile on the Juvenile Act. because nowadays juvenile crimes resemble with adult crimes in ferocity.

The Juvenile Ac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deology to national relation on juvenile protectionism. Therefore, juvenile should be understood as unmatute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nation ought to strive to make them grow as sound citizen through education and welfare rather than punishment. The problem to solve is formation of an issue to boost requirement of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and of strict punishment

whenever juvenile crime happen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eek problems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bill of the Juvenile Act. in 2017, and the direction to revise the Act. based on the found problems.

Key Word: Juvenile Act,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Crime, Adult Crime, Strict Punishment